

#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70호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 방송통신사무소장

-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4.06.27. ~ 2024.07.10.(14일)
-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합)와이즈앤 플라워	151213-0001849	0178200274100000160	₩29,736,000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 69, 1층
2	김광태	91.00.20.	0178200274100003479	₩10,62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시동로 58번길
3	김전수	65.00.01.	0178200274100008241	₩31,86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54번길
4	제이텔레콤 주식회사	150111-0147913	0178200274100008228 0178200274100008829	₩11,947,500 ₩11,947,5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708, 408동 502호
5	주식회사무송 산업개발	151111-0039119	0178200274100003472 0178200274100003476	₩26,550,000 ₩13,275,000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
6	강보식	68.00.25.	0178200274100003484 0178200274100003492	₩35,400,000 ₩13,381,2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33번길
7	곽노근	53.00.05.	0178200274100008219	₩21,24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8	신정호	66.00.14.	0178200274100008226 0178200274100008838 0178200274100008866	₩21,240,000 ₩12,390,000 ₩13,381,2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주현로 34번길
9	이종철	75.00.23.	0178200274100003482	₩31,860,00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10	장경수	62.00.05.	0178200274100000186	₩18,0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31번길
11	전우현	88.00.19.	0178200274100008862	₩47,790,000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중앙대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2	황병규	68.00.15.	0178200274100008856	₩31,8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47 길
13	박용자	67.00.10.	0178200274100008216	₩8,850,000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충민로방곡 3 길
14	서민원	61.00.21.	0178200274100008218	₩17,700,000	세종특별자치시 밖은뜰로
15	조윤원	74.00.30.	0178200274100008215	₩1,77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03 번길
16	백문운	90.00.25.	0178200274100003480	₩10,620,000	충북 충주시 성터 9 길
17	이재근	63.00.06.	0178200274100008237 0178200274100008860	₩31,081,200 ₩53,100,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량로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